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6 선고 2020가단5136521(본소), 2020가단5188218(반소) 판결
[공사대금 · 정산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중, 오동기

피고(반소원고)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별

담당변호사 송동원

변 론 종 결 2021. 5. 18.

판 결 선 고 2021. 7. 6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12,542,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6. 2.부터 2021. 7. 6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7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하고,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에게 44,01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 : 원고는 피고에게 59,033,3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.

가. 원고는 장치 장식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, 피고는 ‘C’이라는 상호로 장식용품, 인테리어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.

나. 피고는 D 주식회사(이하 ‘발주자’라 한다)로부터 E 제작시공을 769,527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에 도급받아 2019. 10. 15.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트리구조물 설치공사(이하 ‘이 사건 공사’라 한다)에 관하여 계약금액 533,5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, 지체상금을 총 계약금의 3/1000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(이하 ‘이 사건 하도급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는데,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.

제2조(기간)

① 착공 : 2019. 11. 1.(제작일정에 따라 변동가능)

② 준공 : 2019. 11. 5.(날씨 및 제작일정에 따라 변동가능)

* 준공시점은 공사 완료 후 수급인의 요청에 의한 도급인의 검수, 검사가 완료되어 합격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.

제7조(지체상금)

①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'지체상금'이라 한다)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수급인이 제1항의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. 단, 수급인이 사전에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지연사유를 통보하고, 이를 도급인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3조(검사의 기준, 방법 및 시기)

①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공사결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불합격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
②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, 검사에 2차 이상 합격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은 인수를 거부하고 수급인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일부만 인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사대금 중 인수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한다.

④ 상기 항과 관련한 손해가 도급인에게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다. 원고와 피고는 준공기한을 2019. 11. 15.로 연장하였고, 원고는 2019. 12. 7.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.

라. 피고는 2020. 5. 12.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92,789,000원(= 선금금 160,050,000원 + 중도금 266,750,000원 + 잔금 65,989,000원)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 내지 3, 3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1)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33,500,000원 중 40,711,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.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트리 구조물의 링 부분에 영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한 LED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추가공사(이하 '이 사건 추가공사'라 한다)를 하였고, 그 공사대금으로 3,300,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,011,000원(= 40,711,000원 + 3,300,000원)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의 주장

가) 원고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, 추가공사비로 3,300,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.

나) 원고는 연장된 준공일인 2019. 11. 15.을 경과한 2019. 12. 7.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,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35,211,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, 위 지체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.

나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33,500,000원 중 492,789,000원만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공사대금 40,711,000원(= 533,500,000원 - 492,789,000원)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비 3,300,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, 갑 제3, 6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추가공사비로 3,300,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.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

1)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3/1000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, 원고가 연장된 준공일인 2019. 11. 15.을 경과한 2019. 12. 7.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

의무가 있다.

2)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영상에 문제가 있었고, 피고가 예정에 없던 추가 시공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,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증인 F,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는 G(H)에게 영상 제작을 의뢰하였고, 원고는 트리에 위 영상을 송출하는 작업을 F(I)에게 의뢰한 사실, G는 영상을 제작해 영상 파일을 F에게 제공하였으나, 위 영상 파일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은 사실, 이에 G는 영상 파일을 여러 차례 수정해 F에게 제공하였으나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, 영상 송출 프로그램을 제작한 중국 업체에서 위 영상 파일의 용량을 줄이는 작업을 마친 뒤에야 영상이 송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가 제공한 영상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, 피고가 추가 시공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.

3) 다만,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(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,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약정의 내용,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기간과 지체상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80%로 제한한다.

4)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28,168,800원[= 533,500,000원 × 지체일수 22일1) × 3/1000) × 80%]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인 2019. 12. 7.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,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. 5. 13.자 준비서면이 2021. 5. 17.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양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

라. 소결론

피고는 원고에게 12,542,200원(= 40,711,000원 - 28,168,800원)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. 6. 2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

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. 7. 6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1) 원고의 주장

원고는 견적서 및 설계도면과 달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구조물이나 장식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,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3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시공부분에 해당하는 59,033,302원을 정산금,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순번	미시공 내역		시공비용
1	리본띠 구조물	견적서상 리본띠 구조물을 5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3개만 설치	28,333,302원
2	오너먼트	견적서상 오너먼트 750개를	8,700,000원

		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설치하지 않음	
3	크리스마스트리 구조물	설계도면상 10단으로 제작되어야 하나 8단으로 제작	10,000,000원
4	위 각 구조물 설치비 등	위 3개 항목 시공을 위한 인건비 등	12,000,000원
	합계		59,033,302원

2) 피고의 주장

원고는 발주처, 피고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시공부분을

시공하지 않았을 뿐이다.

나. 판단

을 제1, 4 내지 6,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(을 제1호증)에 트리구조물 1식 70,000,000원, 리본띠 구조물 1식 20,000,000원, 리본RGB 1식 40,000,000원, 오너먼트 750개 8,700,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, 총 견적금액은 480,000,000원(부가가치세 제외)인 사실, 설계도면(을 제6호증)상 트리 구조물은 10단으로 되어 있는 사실, 원고가 제작한 트리 구조물이 8단이고, 리본띠 구조물은 3개가 설치되었으며, 오너먼트는 아예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을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견적서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략적인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,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,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공사비 총액을 정한 총액계약이고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공물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점,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 및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인수한 점, ④ 발주처 역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하자를 주장한 바 없고, 도급금액 전액을 지급한 점, 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 3,300,000원을 포함하여 잔금 110,000,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2020. 2. 28. 원고에게 견적서보다 증액된 공사대금 5,500,000원과 추가공사비 3,300,000원을 합한 8,800,000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, 이 사건 공사에 미시공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감액을 요구한 바 없고, 2020. 5. 12. 증액된 공사대금 5,500,000원과 일방적으로 산정한 지체상금 35,211,000원만을 공제한 후 잔금 65,989,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미시공 부분을 하자로 평가하거나, 감축된 물량에 상응하는 금원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류희현

1) 2019. 11. 16.부터 2019. 12. 7.까지